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2164 친양자 파양
원 고	갑 (1975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피 고	1. 을 (1975년생, 남)
	주소
	송달장소 **교도소(수용자번호 : 000)
	2. 병 (2002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특별대리인 000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 을과 피고 병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 1월 피고 을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년 6월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 을은 원고와 혼인기간 중이던 2010년 3월 친양자입양허가심판의 확정에 따라 원고의 딸인 피고 병을 친양자로 입양한 사실, 그런데 피고 을은 이후 피고 병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병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피고 을은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 병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